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ODA) 신규 사업단 선정 공고

교육부에서는 정부와 국내대학 공동으로 대학의 자원 및 학문적·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수원국가의 고등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국가의 협력의향 확인 등 국제개발협력 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2027년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교육부장관 쇠 교 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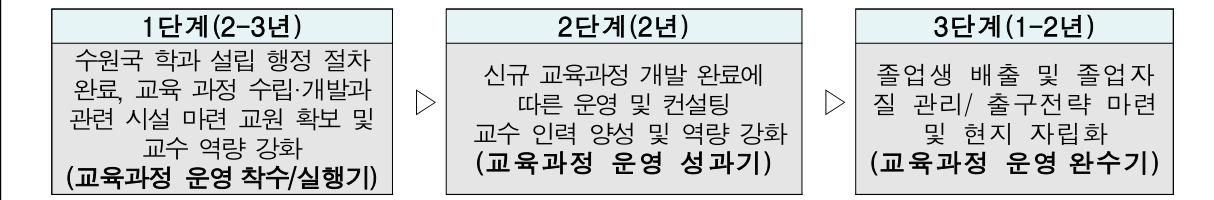
- 국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나. 지원 내용

- (필수) 기본형과 다자협력형 중 하나의 과제 유형을 선택
 - (기본형) 수원국 대학의 학과(또는 학부/단과 대학) 신설·개편 지원, 수원국 대학 학생 단기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다자협력형) 타 공여국 대학과 협력하여 수원국 대학의 학과 신설·개편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교직원 역량 제고(강의 지원, 학생 인턴십 파견, 교직원 초청연수, 국제 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 ※ 다자협력은 개인 차원이 아닌 기관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주관기관(대표 대학)에서 사업비를 중앙 관리·집행해야 함
- ※ 다자협력형 과제의 경우 기본형 과제로 지원한 타 대학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과제 예시) 수원국 대학 학과 구축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 ① 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교육 커리큘럼 수립, 교재 개발 등)
- ② 교육 인프라 확충(교육 및 실습환경 개선 등)
- ③ 교수진 역량 강화 교육(교수법 교육 및 컨설팅 등)
- ④ 협력 수원국 대학 학생 단기 초청 연수 등



- (선택) 필수 프로그램과 연계한 수원국 내 지역대학 산학협력, 창업 프로그램,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중 운영
 - ※ 현지 상황을 고려한 기초·중등 교육, 산학, 보건, 위생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국별협력전략(CPS)의 중점분야 참고 연계 권장(www.odakorea.go.kr)
- (교수양성) 교육부 정부초청장학사업(GKS)과 연계하여 학과 구축·개선에 필요한 교원 양성을 위한 수원국 협력대학 출신 학생 및 교원 등을 GKS 장학생으로 배정 지원
 - ※ 사업단별로 2~3차년도 정부초청장학생(GKS) 각 2명씩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선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4차년도 2명 추가 배정 신청 가능 단, GKS 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단, 해당 대학이 GKS 수학대학이 아닌 경우 가능한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생 배정

다. 지원 유형 및 규모

○ 지원 유형

- (자율형)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계획 및 수행기관을 결정하되, ODA 실적과 사업수행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
 - ※ 신청 대학이 필수과제 유형에 따라 협력 공여국·대학과 협력 수원국·대학을 선택하고 사업계획 제시
 - **신규모델** : 본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았던 일반 또는 전문대학의 유·무형 자산으로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

- **확산모델** : 사업기간이 종료된 기존 사업단 중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 수원국 내 다른 대학 또는 다른 수원국의 경우 기존 지원 분야에 한정하여 선정

※ 기존 종료 사업단 참여 인력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함(기존 사업 책임자 반드시 참여)

- (지정형) 정부 정책 방향, 수원국 협력 수요, 관련 전문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협력 수원국·대학 또는 분야를 지정하여 지원 대학 공모·선정

: (수원국) 이집트 / (협력분야) 이공분야(세부 분야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자율형 3개 내외, 지정형 1개 대학

- 자율형 3개 내외(대학 2개 내외, 전문대학 1개 내외), 지정형 사업단 1개
- 대학과 전문대학은 구분하여 선정하되, 심사 결과에 따라 트랙별 선정 규모 조정 가능

※ 적정 수준의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간 : 유형에 따라 구분 지원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 중단 가능)

- 대학 신규 사업단 및 우수사업 확산형 중 다른 수원국 지원 유형 : 7년(3+2+2년)
- 확산형 중 기존 지원 수원국 내 다른 대학 지원유형 : 6년(2+2+2년)
- 전문대학 : 5년(2+2+1년)

※ 매 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 불량(D) 등급 등은 다음 단계 사업추진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 유형 (국내 신청대학 기준)		지원 기간	지원 예산		신규사업단 지원 규모
			연간 지원액	총 액	
자율형	대학	7년 (3+2+2)	·1차년 1억 ·2차년 이후 4억 내외	25억원 내외	2개 내외
	대학 (확산 모델)	타 국가 확산	7년 (3+2+2)	·1차년 1억 ·2차년 이후 4억 내외	
	동일 국가 확산	6년 (2+2+2)	·연 4억 내외	24억원 내외	
	전문대학	5년 (2+2+1)	·1차년 1억 ·2차년 이후 4억 내외	17억원 내외	1개 내외
지정형	대학	7년 (3+2+2)	·1차년 1억 ·2차년 이후 4억 내외	25억원 내외	1개

※ 단, 심사 결과에 따라 트랙별 선발 규모를 조정 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2027년 예산 규모에 따라 최종 선발 규모와 필수과제 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별 지원 예산 변경 가능

라. 지원 대상

- (지원 수원국) 3기 중점협력국 27개국을 포함한 OECD DAC(개발원조 위원회) 지정 개발도상국

< 3기 중점협력국 현황(27개국) >

- 아시아 :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 아프리카 : 가나,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 중남미 :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CIS·중동·오세아니아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26.2월) 시 4기 중점협력국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국가를 우선 고려

※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과 기존 협력 이력이 없는 국가와의 협력 시 우선 고려 예정

-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3단계(출국권고)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0404.g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 예외

- (지원 수원국 대학) 상기 대상 국가 내 2~4년 학제의 고등교육기관^{*}(직업훈련기관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단별 1개 기관과 협력

※ 대학(확산모델) 중 동일 국가 내 확산의 경우 1개 이상 고등교육기관과 협력 가능

* 해당 국가에 법적으로 등록, 인증된 고등교육기관

< 신청 기관별 협력 대상대학 >

주관 대학	협력 대상 대학
국내 대학	↔ 개도국 현지 4년 이상 학제의 고등교육기관
국내 전문대학	↔ 개도국 현지 2-3년 학제의 고등교육기관

- 기타 : 개도국 현지 대학이 2-3년제 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는 경우, 현지 대학이 전문학사-학사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경우 등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 모두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지원

마. 지원 조건

- 선정 대학은 매년 국고지원금 10% 이상 재정 투입

< 투입 가능 항목(예시)>

- (인건비) 사업 책임자의 수업시수 조정을 위해 임용한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업활동비) 현지 협력대학 등 학생을 초청하여 지급하는 대학 자체 장학금
- (사업활동비) 현지 협력국가 대상 학생 봉사단 파견 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인건비) 사업단 지원을 위해 선발한 행정 인력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사업활동비)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 및 설비 지원 비용 일체

※ 사업단 특성에 맞게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을 사업계획에 제시(선정평가 시 반영)

2. 신청 자격

가. 신청 대상 및 단위

- (신청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해당 국내 대학

<지원 유형별 신청 자격>

지원 유형	신청 자격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5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신청 제한)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 대학,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대교협·전문대교협) 경영위기대학(사학진흥재단)

- 대학별 부정·비리사항에 따라, 선정평가 시 수혜제한 적용 조치 가능

※ 사업단 예비선정('26.2.) 및 최종 선정('26.12.), 사업단별 단계평가 시 위 지원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사업중단 등 조치 가능

※ 사업단 최종 선정('26.12.), 사업단별 단계평가 시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 사업단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사업중단 등 조치 가능

- (신청 단위) 사업단 : 국내 주관대학과 수원국, 공여국 협력대학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대학 및 참여기관 포함 가능

※ 자율형, 지정형 과제 모두 각 유형에 대해 한 대학에서 다수 사업단을 지원하는 경우 전공(학과)/단과대학을 상이하게 구성하는 경우만 허용

※ 자율형과 지정형 간 동일 사업단이 두 유형 동시 신청 가능함 (다만, 선정은 하나의 유형에서만 선정, 지정형 우선 선정)

- (사업단장 자격) 국내 주관대학 소속 교원

- 참여제한: 교육부 소관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따른 제재 조치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단장을 맡을 수 없음
- 최초 결정된 사업단장(컨소시엄의 경우, 공동대학 사업책임자 포함)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사업기간 내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히, 단계(2년 또는 3년) 내 사업단장의 변경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
- (참여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사업단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도 참여할 수 있음
※ 확산모델은 기존 사업단 참여인력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함(기존 사업 책임자 필수 참여)

나. 컨소시엄 구성

- 대학-대학 또는 대학-전문대학 등 컨소시엄은 1개 사업단으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대표 1개 대학 명의로 신청하며, 지원 유형(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대표(신청)대학의 유형에 따라 신청
※ 사업 선정 시 공동대학 중 대표 대학에서 사업비 중앙 관리·집행해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공동 대학은 대표 1개 대학과 상호계약(각 참여대학·기관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내 연계 필요성 및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를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할 때, 해당 대학 간 1주일 내 수용 여부 결정(사업 조정안 제출 必) 미수용 시 선정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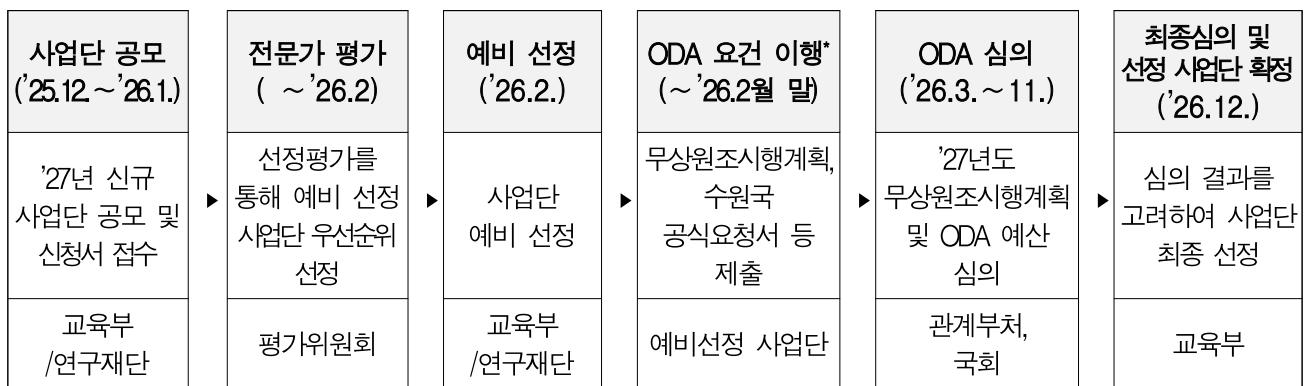
다. 참여기관

- 시·도 교육청, 기업, ODA 관련 민간단체 등 참여 가능

< 참여 기관 자격 >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소 및 기업체부설연구소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광역 및 기초 시 · 도교육청 또는 특별행정기관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년간 납부실적이 있는 영리법인의 본사, 지사 및 사업장
-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3. 선정 절차



가. 사업단 공모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7년도 신규 사업단 공모

나. 전문가 평가

- 국제개발협력, 교육학 및 전공분야 전문가로 평가 패널을 구성하여 패널서면(토론)평가(1차)와 발표평가(2차) 실시
 - ※ 접수 사업단 수에 따라 패널서면(토론)평가/발표평가 통합 추진 가능
 - ※ '26년 예비 선정되었으나 최종 탈락한 대학(사업단)이 '27년 신규사업 신청 시 1차 서면평가 면제('27년 신규사업에 한해 면제)

다. 예비선정

- 4개 내외 사업단을 예비 선정

라. ODA 요건 이행(중요)

- 예비 선정 사업단은 무상원조 시행계획, 수원국 정부의 사업요청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외교부 심의에서 요건 탈락할 수 있음
 - ※ 예비 선정 사업단은 수원국 사업요청서를 개별적으로 제출 준비 필요
 - ※ 제출 방법은 하단 5.신청방법 및 기한 참고
- (무상원조 시행계획) 매년 3월 중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외교부로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 주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무상개발협력전략 회의를 통해 무상원조 사업을 종합 조정·심의
 - * 제출 내용(양식 등) 및 기한 : 추후 안내('26.2월경)

마. ODA 심의

- 외교부,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재부 및 국회 등 '27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및 ODA 예산 심의 실시
-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 심의 과정을 통해 ODA 사업 중복성 검토 및 타 ODA 사업과의 연계 검토 추진

바. 최종 심의 및 선정 사업단 확정

- 외교부, 기재부 등 사업 심의 및 정부 예산 확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사업단 확정

사. 협력대학 간 MOU 체결 내역 제출 및 협약 체결

- 선정 사업단은 협약 체결 전까지 수원국 및 공여국 협력 대학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필수 포함 내용 :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할 프로그램 내용 및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합의

4. 선정 기준(안)

- 선정 방향 : 본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았던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유·무형 자산*으로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자율형 신규 사업단에 한함)

< 심사 시 참조할만한 유·무형 자산 예 >

- (역량) 교육 분야 또는 협력 분야 ODA 유경험자가 본 사업단에 다수 참여
- (타당성) 수요조사(F/S), 공동연구 결과를 제출, 대학의 국제화 역량(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 참여 등)
- (대학의 의지) 본 사업을 위한 행정 지원 대책 수립, 사업단장 지원방안 등 국내 대학 본부의 의지가 높은 경우
- (타기관 협업) 국제기구, KOICA, 수출입은행, 민간 분야 협업 역량 등

- 평가 항목

영 역	평 가 항 목
적 절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 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ODA전략, 국정과제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우리나라(공여국) 국내외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유엔 SDGs, 유네스코 Education 2030 교육의제 기여 가능성 - 수원국 정책과의 부합성(수원국 정부의 공식 요청서 등) - 사업 추진계획 내용(세부 프로그램, 인력 구성, 관리역량 등) 및 방식(현지지관과의 협력 등)의 적절성 ○ <u>사전조사의 구체성 및 적절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조사(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포함 -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과 내용, 현지 네트워크 등의 정보 포함 ○ <u>수원국 환경 이해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이해도 및 수원기관 선정의 적절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환경변화에 대한 관리방안, 대응계획 수립 여부 등 ※ 수원국 현지대학 평가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평가 포함
효 과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 구성 요소(Component)의 타당성 및 적절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선(안) 또는 학과 운영(안) 도출을 위한 사업내용 반드시 포함 - 사업목적과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상호 시너지 창출의 가능성 ○ <u>성과목표(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정성적 자료 및 수집 방법, 분석 절차 등을 제시
영 향 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원국 고등교육체제 선진화에 기여 가능성</u> ○ <u>성과 확산 전략의 적절성</u>
지 속 가능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지 대학 구성원 자립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 진로 및 교수 요원 확보 계획, 수원국 정부의 지원 계획 등 관련 출구전략 ○ <u>수원국·현지협력대학, 관련 유관기관(KOICA, EDCF 등),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및 정보 공유·활용 방안</u>
효 율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단 역량과 준비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장 및 참여인력의 ODA 사업경험과 전문성,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관기관의 사업 추진의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의 ODA 사업 경험과 지원체제, 사업 추진의지(예산, 제도, 대학 본부 협조) ○ <u>예산 편성의 효율·효과성</u> ○ <u>인력 활용 계획의 효과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전담 인력(PM) 파견 계획 등 ○ <u>사업관리체계의 효율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모니터링체계, 사업단과 대학본부 간 협력체계 및 위험요소 관리 등 ○ <u>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시설·자원 활용의 효율성</u>
일 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국내 ODA 사업과 연계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부처(기관) 사업에 대한 연계성 및 시너지효과 검토 여부 - 한국ODA기관 사업과 연계성 및 시너지효과 검토 여부 ○ <u>협력기관/분야 내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ODA 사업과 연계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공여기관/주체 사업과의 상호연계성, 시너지효과 검토여부
범 분야	○ <u>젠더·인종(민족) 등 취약계층 참여 저해 및 환경영향 연계 요소 등을 해소하려는 의지</u>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6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지표 활용

○ 수원국 협력 대학 평가 기준

※ 해당 기준(가이드라인)은 사업단 선정을 위한 절대적 기준은 아님

수원국 현지 협력대학 평가 가이드라인	
(공통) 기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에 법적으로 등록, 인증된 고등교육기관 ▶ 현재 운영 중인 고등교육기관 ▶ 해당 국가의 국가적 우선 지원 대상인 교육기관 ▶ 해당 국가, 지역 사회 및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기관
(공통) 준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대학과 협약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인지 여부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을 위해 국내대학과 지원 분야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여부 ▶ 대학의 발전계획 또는 국가 교육발전계획 등에 지원 프로그램이 부합하는지 여부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에 대하여 최고 의사 결정자, 사업 책임자가 적극적 협력 의지를 보유하는지 여부 ▶ 협력 프로그램을 국내대학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전문 대학) 현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ociate degree과정 운영 고등직업교육기관 등 ▶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관에 한하며, 고교연계 교육과정(3+2), 4년제 대학 내에서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제외

5. 신청 방법 및 기간

가. 공모 기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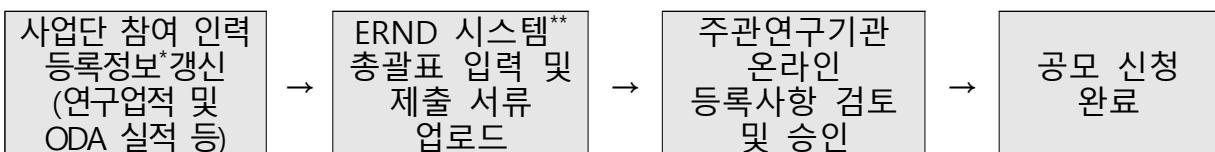
- 공모 기간 : 2025.12.22.(월). ~ 2026.01.21.(수), 18시

※ ERND 시스템에 직접 입력사항이 다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여유시간을 두고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기한 내 주관기관 미승인 시 접수 제외됨

- 제출 서류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연번	신청 서류 양식	양식	제출 기한	제출 방법
1	사업계획서 (신규모델, 확산모델)	별도 양식 (홈페이지 게시)	2025.12.22. ~ 2026.01.21. 18:00 <u>(주관기관 승인 마감 동일)</u>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통합 시스템(http://ernd.nrf.re.kr)에 사업단장 아이디로 서류 온라인 제출
2	재정투입확약서(총장 직인)			
2	사전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4	협력의향서 (Letter of Intent(LOI))	자유 양식 (참고1 샘플 참조)		
5	수원국 사업요청서(PCP)	자유 양식 (참고2 샘플 참조)	~'26.2.28.(금)	재외공관을 통해 교육부 교육국 제화담당관으로 공문 제출

- ERND 시스템 온라인 제출 절차(KRI 등록정보 사전 갱신 필요)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통합 시스템(<http://ernd.nrf.re.kr>) 및 KRI(www.kri.go.kr)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록정보 갱신(ERND시스템 신청 시 내 국내 참여인력 입력)

** ERND시스템 신청 시 시스템 내 국내 참여인력만 입력(해외 참여인력 제외)

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협력대상국가(대학), 기관 역량, ODA 지원 프로그램 내용, 인적·물적 자원(핵심요소) 투입 계획, 추진 전략 등을 기술하여 제출

- 핵심요소별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과(단과대학) 신설 시 해당 국가 교육당국의 승인 절차와 소요기간, 승인 가능성, 예상 리스크(기존 교수의 반발 등) 해결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 (재정투입 확약서) 국내 대학의 매년 국고지원금 10% 이상 재정 투입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여 총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협력 수원국, 대학, 학과(학부)에 대한 현황, 수요, 사전 기초 조사,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용을 작성 제출
- 학과(단과대학) 신설 시 해당 국가 교육당국의 승인 절차와 소요기간, 승인 가능성, 예상 리스크(기존 교수의 반발 등) 해결 방안 및 졸업생의 사회 진출 방향(산업/시장분석 및 인프라) 등을 반드시 명시
- (협력의향서(LOI))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할 프로그램 내용 및 이를 위한 지속적 협력에 대한 합의(참고1)
 - ※ 협력 수원국 대학과의 협력의향서, (다자협력형인 경우) 협력 수원국 대학 및 공여국 대학과의 협력의향서
- (수원국 사업요청서) 협력 수원국의 공식적인 사업요청서로 수원국 수요 중심의 사업 발굴을 위해 수원기관(협력대학)이 작성하여 수원총괄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참고2)
- 요청사업명, 사업기간, 영문 사업제안서(PCP) (공문 첨부 문서) 등을 포함
 - *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목록 [참고 3] 자료 참조

< 수원국 사업요청서 제출 방법 및 접수 경로 >

- 수원국 협력대학 및 관계부처(PCP) → 수원국 수원총괄기관(공식사업요청서+PCP) → 재외공관 → 한국 정부(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예시) 가나 ○○대학 및 교육부 PCP 작성 및 제출 → 가나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PCP 및 사업요청서(공문) 발신 → 주가나대한민국대사관 →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공문 접수
 - ※ 사업요청서 제출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적시에 공문 제출을 완료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원국 협력대학/정부관계자,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적용 규정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 478호)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 관리 기준

나. 참고 사항

- 해당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책 5공(4책 6공) 또는 2책 3공(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참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ODA 사업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간접비는 국고지원금의 5% 이내, 연구수당은 국고지원금의 5% 이내로 제한함.
※ 연구자별 지급금액 상한은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 관리 기준 참고

다. 관련 자료

- 사업 관련 각종 양식(사업계획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nrf.re.kr](http://www.nrf.re.kr)) 참조
 - 사업 안내 > 전체사업 카테고리 > 국제협력사업 > 국제협력선도 대학사업 > 사업공지

7. 문의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044-203-6774, 6775)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개발협력팀(**☎** 02-3460-5761, 5765)
- 전산시스템 문의(**☎** 042-869-7744)

참고 1

협력의향서(LOI) 예시

※ 개별사업단별 변경 가능

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Insert name of Leading University)

and

.....University(Insert name of Cooperative University)

whereas, both (name of Leading university) and (name of cooperative university) agreed to cooperate to newly establish a department of related to the "Leading University Proje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reas, the two universi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role of this project in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Now therefore, after friendly discussion, both parties intend the following:

1.

2.

3. This letter is written in both English and in two copies, and both papers have the same governing force.

Signatories

NAME OF UNIVERSITY

NAME OF UNIVERSITY

(NAME)

(NAME)

(TITLE)

(TITLE)

(COLLEGE/DEPARTMENT)

(COLLEGE/DEPARTMENT)

(DATE)

(DATE)

참고 2

수원국 사업요청서 · 사업제안서 예시

※ 개별사업단별/국가별 변경 가능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공식 사업요청서 [예시]

수원국 수원총괄부처명

To

수원국 주재 한국대사관

수원국 수원총괄부처 presents its compliments to 수원국 주재 한국대사관 and has the honor to submit a request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ject “과제명” .

The Ministry would be most grateful if the Embassy(한국대사관) could kindly deliver this project to the Korean authorit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concerned for kind consideration.

The Ministry avails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Korea the assurance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월 일

장관 서명/직인

수원국 수원총괄 부처

[첨부 : 사업제안서(PCP: Project Concept Paper)]

수원국 해당 부처 사업제안서(PCP) [예시]

수원국 해당부처명(예: 교육부, 보건부, 농림부 등)

To

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한국의 교육부)
Government Complex-Sejong, 408, Galmae-ro,
Sejong, 30119 Republic of Korea

Project Request Form for the project proposal on : 과제명

Excellency,

As above stated objective, on behalf of 수원부 해당 부처,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your kind cooperation with 협력대학. We strongly support the project proposal which will describe the following :

- 1) Necessity of Project
- (해당 내용)
- 2) Project Goal
- (해당 내용)
- 3) Mutual Cooperation
- (해당 내용)

※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file for the details.

Hereby we inform you that the Ministry of 수원국 해당 부처 fully supports this initiative and calls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funding of the Proje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leading universities in 2019 and we wish you all success in carrying out the proposed work.

Sincerely yours,

장관(서명)
수원국 해당 부처

참고 3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 중점협력국 】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가나	Ministry of Finance
네팔	Ministry of Finance
라오스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MPI)
르완다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MINECOFIN)
몽골	Ministry of Finance
미얀마	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방글라데시	Economic Relations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MPI)
볼리비아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세네갈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Cooperation
스리랑카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
에티오피아	Ministry of Finance
우간다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MoFPED)
우즈베키스탄	Ministry of Investments and Foreign Trade
우크라이나	Secretariat of the Cabinet of Ministers
이집트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인도	Ministry of Finance
인도네시아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캄보디아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콜롬비아	The Colombian Presidential Agenc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APC)
키르기스스탄	(무상)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 (유상)Ministry of Finance
타지키스탄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탄자니아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MoFP)
파라과이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파키스탄	Economic Affairs Division
페루	Peruvi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APCI)
필리핀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gency(NEDA)

【 일반협력국 】 * 우리 상주공관 부자 (외교부를 통해 겸임국 공관 확인 필요)

수원총괄기관	
DR콩고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gional Integration and Francophonie
가봉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감비아*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과테말라	SEGEPLAN(Secretaria de Planificacion y Programacion de la Presidencia)
가이아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그레나다*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Economic Development & Physical Development
기니*	(무상)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Cooperation, African Integration, and Guineans Abroad (유상)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Planning
나미비아*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나우루*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나이지리아	Ministry of Budget and National Planning
남아프리카공화국	National Treasury
남수단*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니우에*	Central Agencies
니제르*	The Ministry of Finance
니카라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도미니카공화국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도미니카연방*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동티모르	Ministry of Finance
라이베리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레소토*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레바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migrants
리비아	Ministry of Planning
마다가스카르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마셜제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マイ크로네시아*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말라위*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
멕시코	AMEXCID (Mexic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모로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frican Cooperation and Moroccan Expatriates
모리셔스*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모리타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operation and Mauritanians Abroad
모잠비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수원총괄기관	
몬테네그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몰도바*	Ministry of Finances of the Republic of Moldova
바누아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ternal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베냉*	Ministry of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of Government Action
베네수엘라	Ministry of People's Power for Foreign Affairs
벨라루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벨리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보츠와나*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부룬디*	Ministry of Finance, Budget and Economic Planning
부르키나파소*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부탄*	(프로젝트)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연수)Royal Civil Service Council
브라질	ABC (Brazilian Agency of Cooperation)
사모아*	Ministry of Finance
상투메 프린시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operation and Communities
세르비아	Ministry of European Integration
세인트루시아*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ternational Trade, Civil Aviation and Diaspora Affair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oreign Trade
소말리아*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솔로몬제도*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Coordination
수단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수리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Busi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에스와티니*	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시리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patriates
시에라리온*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아르메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아이티*	Ministry of Planning and External Cooperation
아제르바이잔	The Cabinet of Ministers
아프가니스탄	Ministry of Finance
알바니아*	Prime Minister's Office
알제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앙골라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에콰도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Human Mobility

수원총괄기관	
엘살바도르	Agencia de El Salvador para la Cooperacion Internacional (ESCO)
예멘	Ministry of Planning & International Cooperation
온두라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요르단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라크	Ministry of Planning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Ministry of Plannin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이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자메이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Foreign Trade
잠비아*	Ministry of Finance and National Planning
적도기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조지아	Ministry of Finance
중앙아프리카공화국*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Cooperation
짐바브웨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차드*	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카메룬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카자흐스탄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케냐	The National Treasury
코모로*	General Secretary of Government
코스타리카	Ministry of Planning & Economic policy (MIDEPLAN)
코트디부아르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쿠바*	Ministerio del Comercio y la Inversion Extranjera
키리바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터키	Turkis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gency (TIKA)
토고*	Ministry of Planning and Cooperation
통가*	Ministry of Finance
투르크메니스탄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투발루*	Ministry of Justice, Communications and Foreign Affairs
튀니지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파나마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파푸아뉴기니	Department of National Planning and Monitoring
팔레스타인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 Ministry of Finance
피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